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05
----------	-----

2018. 4. 5. (목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이숙애 의원 등 6인

나. 발의일자: 2018년 3월 14일

다. 회부일자: 2018년 3월 15일

라. 상정일자: 2018년 3월 27일

(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이숙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독서교육과 관련된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지역서점 등과
의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지
역사회 독서문화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명 변경

- 현행: 「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」
- 변경: 「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」

○ 조례 목적의 내용을 보완하여 조문 수정(안 제1조)

- 지적능력향상, 건전한정서 함양, 독서교육습관화
→ 독서능력향상, 지적·정서적 발달, 자기주도적 학습역량강화

○ 용어정의에 지역서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조)

- “지역서점”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
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.

○ 협력체구축에 지역 서점 등을 추가하여 조문 수정(안 제9조)

○ 학교도서관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항 삭제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최광주)

-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한 것으로,
- 학교독서교육이 지역서점을 활용한 독서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, 이를 통하여 지역서점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독서문화 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또한 조례명을 「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」로 변경한 것은 조례가 담고있는 내용의 의미에 대한 대표성을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본 조례 개정의 목적에 따라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도모되기 위해서는 지역서점과 연계한 학교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독서교육에서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적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,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”을 “독서능력 향상을 통하여 지적·정서적 발달을 돕고,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행하여지”를 “행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지역서점”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수립하고 시행하여야”를 “수립·시행하여야”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과 지역서점, 그 밖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충청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</u>	<u>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10조, 「학교도서관진흥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<u>지적 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,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</u>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독 서능력 향상을 통하여 지적·정 서적 발달을 돕고, 자기주도적 <u>학습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</u> 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학교 독서교육”이란 학생들에게 <u>행하여지</u> 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을 통해 독서태도, 지식, 기술, 흥미,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교육 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. 2. “학교”란 <u>「유아교육법」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<u>행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2. -----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

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3. (생략)

<신설>

제3조(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공공도서관과의 협력)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10조(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)

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

제2호의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-----.

3. (현행과 같음)

4. “지역서점”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) -----

----- 수립·시행하여야 ----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과 지역서점, 그 밖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.

<삭제>

한다.

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
를 위해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아
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
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
다.

관 계 법 령

□ 독서문화진흥법

[시행 2017.3.21.] [법률 제14428호, 2016.12.20., 일부개정]

제10조(학교의 독서 진흥) ①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,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>

②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>

1.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학교 도서관의 신설·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3.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
4.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·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

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, 학교 도서관의 설치·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④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⑤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.

□ 학교도서관진흥법 (약칭: 학교도서관법)

[시행 2016.12.20.] [법률 제14401호, 2016.12.20., 일부개정]

제15조(독서교육 등) ① 교육부장관·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>

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.

□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

[시행 2016.5.10.] [대통령령 제27129호, 2016.5.10., 타법개정]

제9조(독서교육 등) 교육부장관·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[법 제15조제1항](#)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1.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 상황
2. 학생들의 독서수준
3. 그 밖에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